# (무) 하나 변액유니버셜보험

# 확 인 서

무배당 하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 합니다.

2005년 월 일

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 임 계 리 사 윤 기 수



# (사업방법서 별지)

-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하나 변액유니버셜보험
- 2. 보험 종류

1형 - 기본형 2형 - 80세 최저사망보장형

3형 - 종신사망보증형

3. 가입연령 : 15세 ~ 70세

4. 보험기간 : 종신

5. 납입기간 : 종신

6. 납입주기 : 월납

7. 보험가입금액 한도 : 1,000만원 이상

8.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이 없음

9.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1)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한다.

(2)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아래와 같다.

가입연령	기본보험료
15~39세	보험가입금액의 0.5%~10%
40~49세	보험가입금액의 1.0%~10%
50~59세	보험가입금액의 1.5%~10%
60~65세	보험가입금액의 2.5%~10%
66~70세	보험가입금액의 4.0%~10%

- (3)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소납입금액은 각각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4) 계약자는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보험료와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 보험료를 계약 체결후 2년동안 최소한 24개월분(이하 "의무납입기간"이라 합

- 니다)이상 납입하여야 한다.(이하 24개월분의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합하여 "의무납입보험료"라 한다)
- (5)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완료시까지는 납입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먼저 계상하고 초과된 보험료에 대해서 추가납입보험료로 계상한다.
- (6)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부터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7)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완료시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8)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특별계정에 적립된 계약자적립금(이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이하 "월대체공제액"이라 합니다)을 충당할 수 있으면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9)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최초 가입시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 료의 납입총액 2배 이내로 한다.

# 10. 기본보험료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기본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본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1)에 의해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에 의한 월대체공제액의 변경된 사항은 승낙일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3)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약처리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 11.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본보험료

- 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1)의 승낙일 통보 후 증액되는 보험가입금액의 적용은 승낙일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3) 보험가입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경우 증액 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적용하는 기본보험료를 승낙일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12.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에 관한 사항

- (1)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은 특별계정 내 계약자 적립금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월계약해당일로부터 그 월계약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으로 한다.
- (2)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완료시(계약 체결후 24개월)까지는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해당월 말일까지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 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으 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9.보험료 납 입에 관한 사항 (5) 내지 (6)에 의해 미리 납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분 의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 13. 기납입 보험료에 관한 사항

(1) 기납입 보험료

「기납입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 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특약보험료 제외)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보 험료를 감액하거나, 약관 제42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14.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및「15. 특별계정의 운 용에 관한 사항의 (가)」에서 정하는 기납입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중도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 다.

인출시까지의 기납입보험료

= 인출직전 기납입보험료 × <u>인출시 계약자적립금</u>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힘 인출시 계약자적립금 감액시까지의 기납입보험료

- = 감액직전 기납입보험료 × <u>감액후 계약자적립금</u> 감액전 계약자적립금
- (3) (2)의 인출(감액)직전 기납입보험료란 인출, 감액 발생시 (2)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직전 기납입보험료를 말한다.
- (4) 계약자가 해당월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특별계정에 적립된 계약자적 립금(이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공 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는 기납입보험료에서 차감 한다.
- 14.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2형, 3형에 한함. 이하 같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 의 사망 보험금으로서 2형은 80세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사망시 사망시 점의 기납입보험료를 말하고, 3형은 종신동안 사망시 사망시점의 기납입보험 료를 말한다
- 15.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은 특별 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3)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일반계정의 최저 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은 사망 시점의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4)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적용한다.

#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 ① 단기채권형: MMF형 펀드, 단기채권 (편입일 현재 만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채권 위주)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콜론(Call Loan),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및 기타 제예금 등의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에 순자산(NAV)의 90% 이상 투자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추구한다.
  - ②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자산 및 수 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90% 이상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한 다.
  - ③ 주식혼합형 : 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고, 주식 (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형 펀드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50%이내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 ④ 주식성장형 : 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주식 (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형 펀드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90%이내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 ⑤ 혼합간접형(Fund of funds): 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글로벌 주식형 및 채권

형 펀드 등에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여 전 세계 주식 및 채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운용하며, 나머 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 자한다.

- (2) 펀드의 수는 1형(단기채권형,주식성장형,혼합간접형)과 2형, 3형(단기채권형, 채권형, 주식혼합형) 각각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3) (1)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기본보험료는 10만원 이상으로한다.

# (2) 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 ①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단,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험료는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3) 펀드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일이후 1년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자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①호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단 펀드 적립금의 이전시 이전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한한다.

③ 회사는 ①호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Max{이전하는 계약자 적립금의 0.1%, 5,000원}이내중에서 회사가 정한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할수 있다.

# (4) 펀드자동 재배분

- ①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 자동 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로 부터 매 6개월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된다.
- ②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자동 재배분 된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 자동 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④ 펀드 자동 재배분은 계약일로부터 매 6개월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라.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마.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 좌당기준가격 = <u>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u> 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및 최저사망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바.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1)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6 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호 및 ②호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 사.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③ ①호 내지 ②호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7.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 ① 제1회보험료 : 초회보험료에서 주보험의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및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② 제2회 이후 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주보험 및 특약의 수금비를 제외한 금액
  - ③ 추가납입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중 추가납입보험료의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를 제외한 금액
  - 단,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21. 기타의 (가)」에 따라 이체한다.
- (2) 약관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 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약관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 (단, 월대체공제액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른다)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 18.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12 회 한도로 월 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단, 약관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 (2) 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Max{인출금액의 0.2%, 5,000원}이내 중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 (3) 인출금액은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또는 인출 당시 2개월분 월대체공제액중 큰 금액을 최저한도로 합니다.
- (4) 인출후 기납입보험료 금액은 「13. 기납입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에 따라 계산한다.
- (5)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 19.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1)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2)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승낙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적립금과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자연식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수금비포함), 특약보험료 제외, 부활일부터 승낙일까지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3) (2)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승낙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을, 연체보험료 완납후 부활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승낙일로 한다.

#### 20. 약관대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2) 약관대출금액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약관대출적립금 계정에 적립한다. (단, 약관대출적립금은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의 계약자적립금에 포함되며, 대출시 펀드별 분배 비율은 대출일 기준 펀드별 적립금 비율로 한다)
- (3) 계약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 단, 상환금액은 상환일에 일반계정에서 상환일 기준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투입하고 약관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
- (4)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21. 기타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회 보험료는, 청약철회기간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단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하여 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②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을 이체사유발생일로
- 나.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 다.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이후 보험기간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1) 보장계약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약시 해약환급금

#### 라. 결산사항의 통지

한다.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 (8)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마. 보험료의 차등적용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회사 자동이체, 급여이체 등을 통하여 납부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0.5% 범위내에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할 수 있다.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사.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증권 및 보험 계약 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

# 아.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된다.
-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자. 특별계정의 제 비용 및 보수에 관한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 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다.

# 차. 계약자 주의사항

1형을 선택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저사망보증 옵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펀드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작 아질 수 있습니다.